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관을 관리 및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명시(안 제4조제2항)
- 사용료 감액관련 자구 통일(안 제13조제1호 및 제4조)

3.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8조(위탁운영철회)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사용”을 “사용할 경우”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신청시에는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를 “신청할 경우”로 한다.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탁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개정 당시 회관의 일부시설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관리자로 보며, 그 수탁관리·운영 기간은 위탁관리·운영협약서상의 기간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4조(회관의 운영)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u>제18조(위탁운영철회)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 까지</u> 로 한다.	제4조(회관의 운영)①(현행과 같음) ② ----- ----- ----- <u>5년</u> <u>이내로 한다.</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명시
③ ~ ④(생략) 제13조(사용료의 감액)(생략)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u>사용</u> 2. ~ 3. (생략) 4. 1인 2종목이상 <u>신청 시에는</u> <u>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u>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감액)(현행과 같음) 1. ----- -- <u>사용할 경우</u> 2. ~ 3. (현행과 같음) 4. ----- <u>신청할 경우</u>	사용료 감액 관련 조항 지구 통일

참 고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③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